

[] 대규모점포

[] 준대규모점포

개설(변경)등록

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①법인명		②법인등록번호	
	③대표자 성명		④생년월일	
	⑤주소 (전화번호:)			

신청 내용	⑥상호		⑦업태			
	⑧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
	규모	⑨건물 연면적 (대지면적)	(m ² m ²)	⑩건물 면적	지하 층, 지상 층	
		⑪영업장 면적	m ²	⑫영업장 규모	지하 층, 지상 층	
		⑬매장 면적	계	판매 면적	용역제공 면적	
			m ²	m ²	m ²	
		⑭공동사용시설 면적	m ²			
	⑮운영방식	계	직영	임대	분양	
		m ²	m ² (%)	m ² (%)	m ² (%)	
	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		m ² (%)		⑰점포수	
⑱영업개시 예정일						

등록증 분실사유

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(변경)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개설 등록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. 사업의 개요(개설자·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에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나.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. 사업의 규모(대지면적·건축물면적·매장면적·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라.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(분양·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마. 업종의 구성 바. 운영·관리계획(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사. 재무구조 2. 상권영향평가서 1부(요약문, 사업의 개요, 상권영향분석의 범위, 상권의 특성,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,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) 3. 지역협력계획서 1부(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,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, 사업내용, 추진계획,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) 4.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)	수수료 10만원 (변경등록 시 없음)
	변경 등록	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.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) 3. 점포의 소재지 변경,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, 업태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)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	
특별자치시장 · 시장·군수 · 구청장 확인사항	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) 3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.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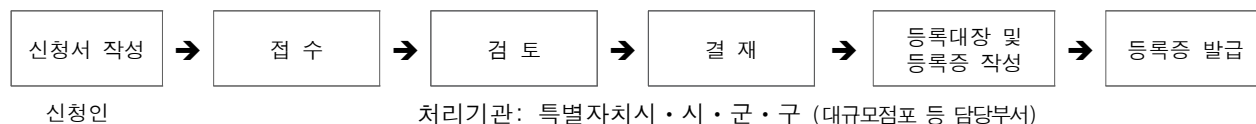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개인의 경우 ①란·②란은 적지 않습니다.
2. ⑩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(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·승강기·연결통로, 관리사무실,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)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.
3.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.
4.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